

① 바다숲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	044-200-5530 044-200-5536

I . 사업개요

1. 목적

-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에 바다숲을 조성·관리하여 바다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성 회복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바다숲 540㎢ 조성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바다숲 조성면적(km²)	25.50	27.68	23.86	25.36	25.41	매년 말	신규조성 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32,754	35,418	35,418	35,418
- 국비	27,186	28,045	28,045	28,045
- 지방비	2,868	4,523	4,523	4,523
- 민간	2,700	2,850	2,850	2,85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
 -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은 지방비 확보계획(추경 확보 등)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바다숲 사후관리 계획을 미수립하였거나, 사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바다사막화(갯녹음)가 진행된 해역별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중 지방비 확보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신규 후보지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인증되는 해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다사막화(갯녹음)으로 훼손된 연안해역의 환경개선 및 해조류 이식을 통한 바다생태계 복원·회복 비용 지원
- 천연바다숲 보호·보전 및 바다식목일 행사 개최 등의 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매칭: 1~2년차 조성(국비 80%, 지방비 20%), 그 외(국비 100%)
 - * '23년 이후 신규사업지부터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으로 전환되어 '26년까지 바다숲 연차별 매칭 확대(지방비 매칭 : '24년 1~2년차, '25년 1~3년차, '26년 이후 1~4년차)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 국비 50%, 민간 50%
- 지원한도(기준): 사업의 명확성, 지방비 투입여건, 민간의 투자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 및 민간에 국비 지원
- 사업의무량: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해역은 4년간 바다숲을 조성하고, 사업완료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의무 이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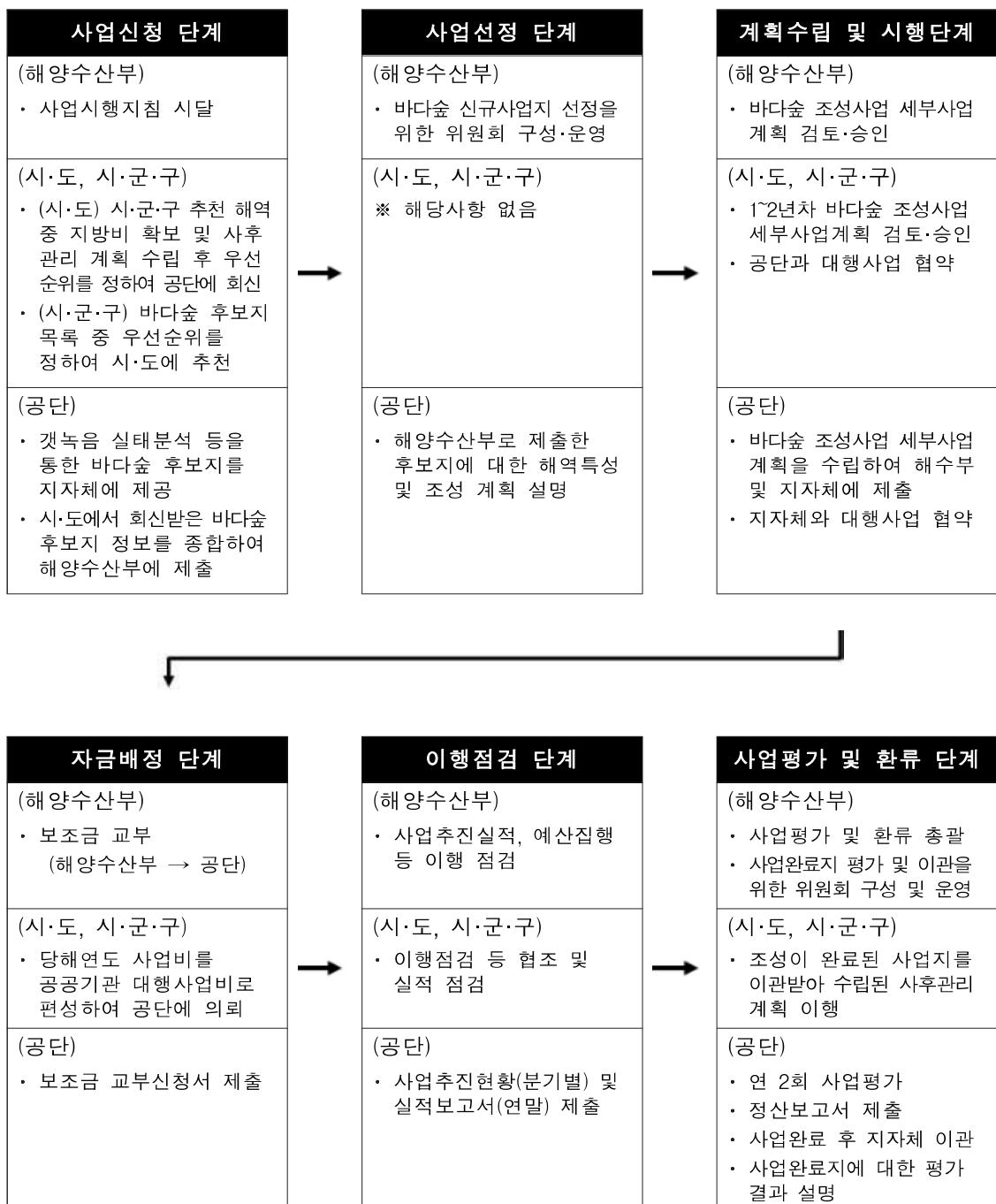
- 지원기준 및 범위
 - 지자체 매칭: 바다숲 1년차 신규조성지 1개소당 소요예산 910백만원 기준 국비 80%(728백만원), 2년차 조성지 1개소당 소요예산 94백만원 기준 국비 80%(75.2백만원) 지원
 - 바다숲 3~4년차 조성, 천연바다숲 보호·보전, 효과조사 및 바다식목일 기념 행사 등 국비 100% 지원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 민간협력 바다숲 신규조성을 위한 민간투자금의 50% 매칭

7. 중요재산 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 별표7(기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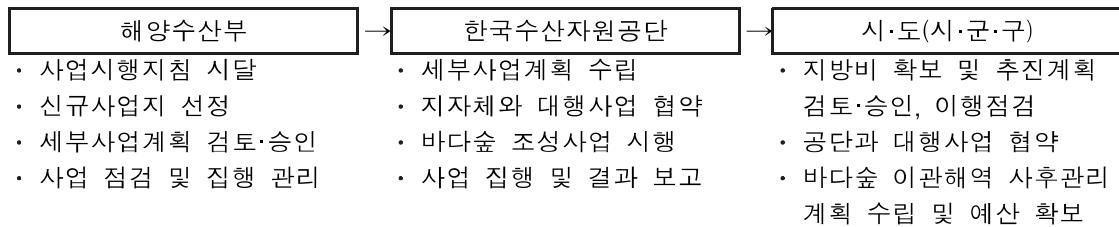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지자체 매칭)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23년 12월(해양수산부)
- 사업지 선정 모집 공고(해양수산부): 매년 11~12월
-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조성사업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재정여건 및 해역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에서 사업 신청 해역을 선택하여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신청 목록과 해당 어촌계의 바다숲 조성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해역 중에 지방비 확보 현황, 사후관리 계획(관리 주기, 주기별 투입예산, 수행내용 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단에 회신
 - 구비서류(별지 서식 참조):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신청 목록, 후보지 신청서,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사후관리 계획서, 어업인 동의서(서명 포함)

한국수산자원공단

- 갯녹음 실태분석 등을 통한 바다숲 후보지 목록을 지자체에 제공

- 시·도에 회신 받은 신청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후보지 사전영향조사결과 및 사업 계획, 각 시·도의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조건을 가진 해역을 사업지로 선정
-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통해 신규지 우선순위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갯녹음 진행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
 - 인공구조물의 활용보다 자연암반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
 - 바다숲 조성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 바다숲 조성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과 사후관리를 우수하게 이행한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
 - 어촌계 참여 등의 협력이 높아 자율관리가 적극적인 해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해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해역
- 선정 제외 및 감점사항
 - 바다숲 사후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지자체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포함한 수산자원증대(산란·서식장 등) 신규사업지 선정시 감점 부여
 - 바다숲 사업기간 내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한 지자체는 가점 부여

*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해역 포함,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확약서 이행 필수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후보지 사전영향조사·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 설명

5.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추진시기: 전년도 4분기
- 2024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 2024년 1월
 -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추경 확보시기와 바다숲 조성시기를 고려하여 국비 우선 집행
- 사업시행주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시·도(시·군·구)

- 바다숲 조성(1~2년차) 세부사업계획(지방비) 변경 시 검토 및 승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역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및 지자체에 승인 요청
- 사업 시행 중 세부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비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지방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6.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1~2년차 사업비의 80%, 그 외 100%)를 공단의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 바다숲 조성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를 공단에 예산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시·도(시·군·구)

-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1~2년차 사업비의 20%)를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및 업무관리 협약 체결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1~2년차 사업비의 80%, 그 외 사업비 100%의 국비(민간자본보조)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지자체와 업무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비(1~2년차 사업비의 20%) 교부 신청

7. 이행점검 단계

《총괄》

해양수산부

-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 및 위기(재난)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 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

《사업 이행》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바다숲 조성사업 적극 지원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류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 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지 이관 조치에 따라,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 실시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개별 사업해역에 대하여 4년간 조성 실시
 - *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가능(해양수산부와 협의)
- 공단은 바다숲 조성 이후, 사업 종료가 확정된 해역의 이력카드 및 완료 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에 결과 보고
 - * 조성완료 후에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 적극 협조
- 공단은 바다숲 조성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유관기관 및 어업인과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
- 공단은 바다숲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해역특성 및 해조류 생활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 수행
 - 바다숲 조성은 바다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조숲, 해초숲 및 산호숲 등을 포함하여 해역특성에 맞게 바다숲을 조성
 - 갯녹음 발생 등의 자연암반을 활용·개선하는 방법을 바다숲 조성 시 우선 고려
 - 바다숲 조성 방법은 갯녹음 암반 복원 및 부착 암반 확장(갯닦기, 종자부착판 설치, 이·보식, 바다숲 조성용 어초 시설, 자연석 시설 등), 포자 확산단지 조성(수중 저연승, 모조주머니 등), 조식동물 밀도제어, 환경 개선 등으로 해역특성과 대상 생물의 재생산 및 확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곰피, 모자반, 다시마 등) 및 단년생(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 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
 - 어초설치가 필요한 경우,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선정은 어초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인공어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선정은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시설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어초의 제작 설계 및 시설 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바다숲 조성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갯녹음 해소율, 해조류 천이와 생물상 변동, 이식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 시설어초의 상태와 부착생물상 등 조사

- 조식동물(성게류, 고등류, 군소류 등)의 서식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 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사 및 자율관리어선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해조(초)류 보식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생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에 의해 조성 당시에 비해 생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조(초)류 보식
-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해조류 양성장을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양식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 * 해조(해초)이식, 씨앗 채취, 관리 등 연구교습양식어장 운영을 위해 어촌계에 위탁 가능
-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생장을 저해하는 폐어구 및 폐기물을 수거·처리 하며, 친환경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절감 노력
- 자연재해(태풍 등) 발생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

〈점검〉

해양수산부

- 바다숲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토록 요구
-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 점검

시·도(시·군·구)

- 1~2년차 바다숲 조성지에 대해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 실적 등 점검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사업비 부정집행 적발 시, 관련 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지연 및 성과 미흡한 해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미이행 지역의 바다숲, 수산자원 증대사업 등 신규사업지 선정 시 평가 제외

8.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 평가내용: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사업추진 성과 및 홍보 등
-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 완료지에 대한 사후영향조사결과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바다숲 조성 완료해역의 이관 여부를 공단에 승인
 - 해양수산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이관 대상지 결정 및 승인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연 2회(중간, 최종)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
 - 평가위원은 7명 이상,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겸증받은 정산보고서 제출
-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완료지에 대한 사후영향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 설명

《환류》

해양수산부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해역은 원인분석을 통해 바다숲 관리 강화 등 시정조치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시·도(시·군·구)

-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신청 단계에서 수립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예산확보 계획, 예산에 따른 수행계획 등)을 수립
- 조성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 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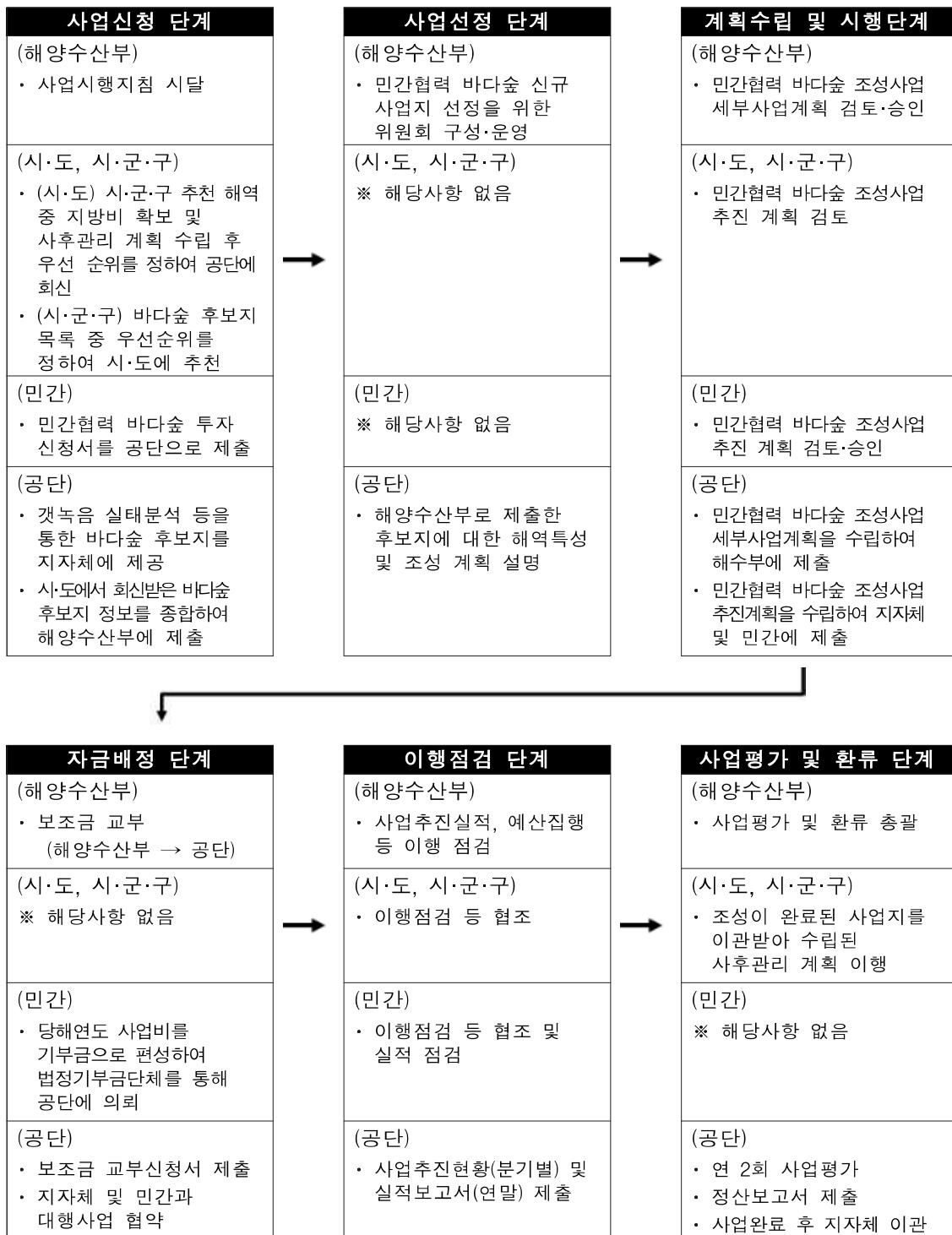
한국수산자원공단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IV.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민간협력 바다숲)

* 민간 : 바다숲 조성사업을 위해 재원을 투자한 기업, 법인, 법정기부금 단체 등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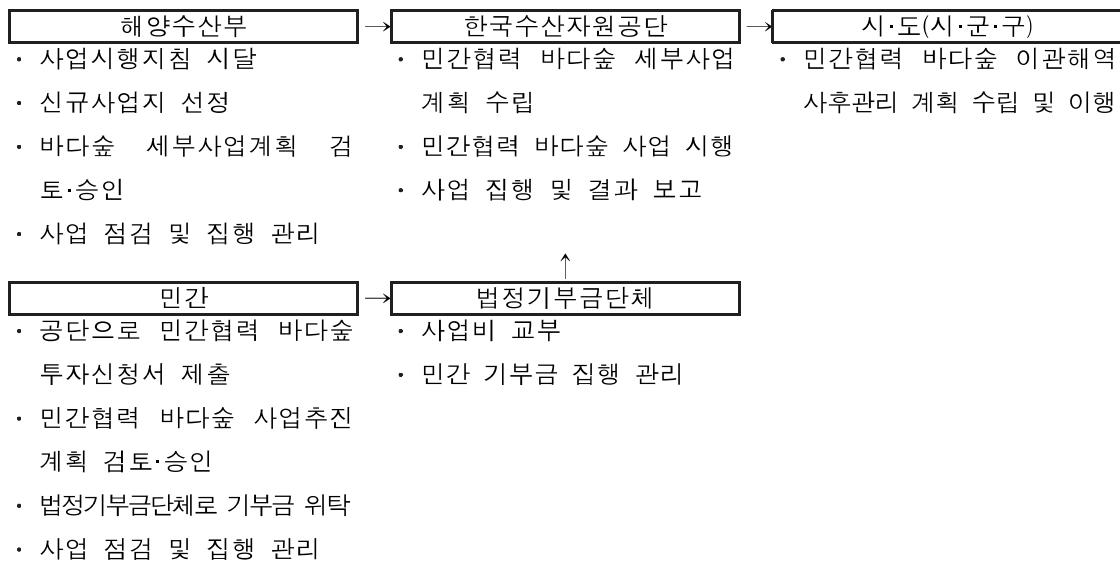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23년 12월(해양수산부)

○ 사업지 선정 모집 공고(해양수산부): 매년 11~12월

○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조성사업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재정여건 및 해역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에서 사업 신청 해역을 선택하여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신청 목록과 해당 어촌계의 바다숲 조성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해역 중에 지방비 확보 현황, 사후관리 계획(관리 주기, 주기별 투입예산, 수행내용 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단에 회신

- 구비서류: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서,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사후관리 계획서, 어업인 동의서(서명 포함) 등

민간

- 공단이 작성한 바다숲 후보지 목록 중 사업 희망지를 선택하여 민간협력 바다숲 투자를 위한 투자계획서를 공단으로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 갯녹음 실태분석 등을 통한 바다숲 후보지 목록을 지자체에 제공
- 시·도에 회신 받은 신청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후보지 사전영향조사결과 및 사업 계획, 각 시·도의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조건을 가진 해역을 사업지로 선정
-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신규지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갯녹음 진행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
 - 인공구조물의 활용보다 자연암반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
 - 바다숲 조성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 바다숲 조성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과 사후관리를 우수하게 이행한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
 - 어촌계 참여 등의 협력이 높아 자율관리가 적극적인 해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해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해역

- 선정 제외 및 감점사항
 - 바다숲 사후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지자체는 바다숲 조성사업을 포함한 수산자원증대(산란·서식장 등) 신규사업지 선정대상에서 제외
 - 바다숲 사업기간 내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지 않는 지자체는 감점 부여
 - *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해역 포함,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확약서 이행 필수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후보지 사전영향조사·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 설명 및 평가 자문

5.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추진시기: 전년도 4분기
- 2024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 2024년 1월
 -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투자금 확보시기와 바다숲 조성시기를 고려하여 국비 우선 집행
- 사업자 선정: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민간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세부사업계획(민간 투자금) 변경 시 검토 및 승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역별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중 세부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비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민간 투자금의 경우 해당 민간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6.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의 50%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민간

- 사업비 또는 현물^{*}의 형태로 법정기부금단체를 통해 공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 포스코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트리톤어초 등에 해당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50%의 국비(민간자본보조)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민간 및 지자체와 업무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투자금 배정 요청

7. 이행점검 단계

《총괄》

해양수산부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 공단이 보고한 사업 종료내용(효과평가 결과 및 지자체 이관협의 결과)을 검토하여, 바다숲 조성 완료해역의 이관 여부를 공단에 승인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 및 위기(재난)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 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

《사업 이행》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민간협력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민간 및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적극 지원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류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 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지 이관 조치에 따라,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 실시

민간

- 민간에서는 민간협력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해당 민간은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적극 지원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개별 사업해역에 대하여 4년간 조성 실시
 - *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가능(해양수산부와 협의)
- 공단은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 이후, 사업 종료가 확정된 해역의 이력카드 및 완료 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민간에 결과 보고
 - * 조성완료 후에도 공단은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 적극 협조
- 공단은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 및 어업인 등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설명, 업무협의 등 추진
- 공단은 바다숲 조성 계획에 따라 해역특성 및 해조류 생활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 수행

- 바다숲 조성은 바다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조숲, 해초숲 및 산호숲 등을 포함하여 해역특성에 맞게 바다숲을 조성
 - 바다숲 조성 방법은 갯녹음 암반 복원 및 부착 암반 확장(갯닦기, 종자부착판 설치, 이·보식, 바다숲 조성용 어초 시설, 자연석 시설 등), 포자 확산단지 조성(수중 저연승, 모조주머니 등), 조식동물 밀도제어, 환경 개선 등으로 해역특성과 대상 생물의 재생산 및 확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
 - 갯녹음 발생 등의 자연암반을 활용·개선하는 방법을 바다숲 조성 시 우선 고려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곱피, 모자반, 다시마 등) 및 단년생(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 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
- 바다숲 조성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갯녹음 해소율, 해조류 천이와 생물상 변동, 이식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 시설어초의 상태와 부착생물상 등 조사
 - 조식동물(성계류, 고등류, 군소류 등)의 서식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 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사 및 자율관리어선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해조(초)류 보식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생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에 의해 조성 당시에 비해 생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조(초)류 보식
 -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해조류 양성장을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양식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 * 해조(해초)이식, 씨앗 채취, 관리 등 연구교습양식어장 운영을 위해 어촌계에 위탁 가능
 -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생장을 저해하는 폐어구 및 폐기물을 수거·처리 하며, 친환경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절감 노력
 - 자연재해(태풍 등) 발생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

《점검》

해양수산부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토록 요구
-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 점검

시·도(시·군·구)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지에 대해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 실적 등 점검

민간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지에 대해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 실적 등 점검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민간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사업비 부정집행 적발 시, 관련 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지연 및 성과 미흡한 해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미이행 지역의 바다숲, 수산자원 중대사업 등 신규사업지 선정 시 평가 제외

8.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 평가내용: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사업추진 성과 및 홍보 등
-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 완료지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바다숲 조성 완료해역의 이관 여부를 공단에 승인
 - 해양수산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평가를 통해 이관 대상지 결정 및 승인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연 2회(중간, 최종)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
 - 평가위원은 7명 이상,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 제출
-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완료지 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 설명 및 평가 자문

《환류》

해양수산부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해역은 원인분석을 통해 민간협력 바다숲 관리 강화 등 시정조치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시·도(시·군·구)

- 민간협력 바다숲으로 조성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신청 단계에서 수립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예산확보 계획, 예산에 따른 수행계획 등)을 수립
- 조성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 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완료 후 지자체와의 업무관리 대행협약에 의거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정산결과와 사업결과 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자체에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3. 사업신청 단계」 와 동일(공고시기 전년도 4분기)

【별지 제1호 서식】

○○○○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시·도	신청 후보지	면적(km ²)	비 고
강원			
경북			
울산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별지 제2호 서식】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신청 목록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0 0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신청서

《개요》

- 위치 :
- 바다숲 해역면적 : 000km²(00,000ha)
- 어촌계명 및 어촌계원 수 :

《해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 어업 특성

-
-
-

《해역 특성》

-
-
-

《해 역 도》



《관리수면 지정 등 관리이용 계획》

-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
 -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

《기대 효과》

-
-
-
-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별지 제4호 서식】

학 약 서

제목: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사후관리

000도와 000시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후관리 주체로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바다숲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어업인 동의서 및 서명서

년 월 일

000 시도지사 (인)

사후관리 계획서 (가로로 표 변경 가능)

년 월 일

000 시도지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동의서

제목: 바다숲 조성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

000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수면이용의 제한 등에 동의하며, 바다숲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첨부: 어업인 동의 서명부

년 월 일

000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000 (인)

【별지 제6호 서식】

2024년도 ○○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2024. . .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2024년도 ○○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00시(군)”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대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대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행사무의 범위)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3. ◇◇◇에 관한 사항
4. △△△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00시(군)”와(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00시(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지급 등) ① “사업비”라 함은 조사·설계비, 구조물 설치비, 모니터링 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00시(군)”은 “공단”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공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00시(군)”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00시(군)”은 “공단”的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① “00시(군)”은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00시(군)”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관계법령·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00시(군)”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00시(군)”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00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공단”的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00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공단”的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的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단”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00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00시(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00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사업비 잔액(집행잔액) 반납 시 위탁대행수수료의 정산금은 별도 반납하지 않는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00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00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00시(군)”, “공단” 쌍방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공단”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공단”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 ② “00시(군)”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의견 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공단”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위탁대행 수수료) “00시(군)”이 “공단”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000백만원)로 한다.

제14조(보고의무) “공단”은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어해석 및 분쟁해결)

-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00시(군)”과 “공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00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00시(군)”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00시(군)”과 “공단”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2024년도 ○○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2024. . .

0000 대표 (인)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2024년도 ○○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기업명 대표(이하 “기업명”이라한다)과 지방자치단체장(이하 “00시(군)”이라 한다), 업무관리 대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및 ‘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대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행사무의 범위)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3. ◇◇◇에 관한 사항
4. △△△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기업명”과(과) “00시(군)”,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명”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지급 등) ① “사업비”라 함은 조사·설계비, 구조물 설치비, 모니터링 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기업명”은 “공단”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공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기업명” 및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기업명” 및 “00시(군)”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기업명” 및 “00시(군)”은 “공단”的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기업명”은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업명”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관계법령·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기업명”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기업명”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기업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공단”的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업명” 및 “00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공단”的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的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단”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기업명”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명”的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기업명”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비 잔액(집행잔액) 반납 시 위탁대행수수료의 정산금은 별도 반납하지 않는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기업명” 및 “00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기업명” 및 “00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기업명” 및 “00시(군), “공단”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공단”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공단”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 ② “기업명” 및 “00시(군)”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공단”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위탁대행 수수료) “기업명”이 “공단”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000백만원)로 한다.

제14조(보고의무) “공단”은 “기업명” 및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어해석 및 분쟁해결)

-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기업명” 및 “00시(군)과 “공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기업명” 및 “00시(군)과 “공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명”의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기업명”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기업명” 및 “00시(군)과 “공단”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기업명” 및 “00시(군)과 “공단”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000000 대표 (인)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② 수산자원 증대(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	044-200-5530 044-200-5536

I.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자원 생산량이 감소한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별 특성과 주요어종 생태를 고려한 어장 및 산란장 등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 구축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 2 (한국수산자원공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수산자원증대사업 조성(개소)	24	11	14	20	23	매년 말	조성지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1,362	62,162	62,162	62,162
- 국비	10,681	31,081	31,081	31,081
- 지방비	10,681	31,081	31,081	31,081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후관리 계획을 미수립하였거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주요 수산자원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장환경 복원 및 수산생물의 산란장 등의 조성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인정받은 해역으로, 사후영향조사(사후관리 등) 계획을 수립된 해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전·사후영향조사(적지조사 포함), 구조물 설치, 모니터링 조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효과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5% 수준으로 편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재원):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기준): 자원회복 계획의 명확성, 지방비 투입 여건,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 지원
- 사업의무량: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해역은 5년간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조성 완료 이후 해당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의무 이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개소당 국비 500백만원* 지원
 - * 국비 지원은 5억을 한도로 하되, 사전영향조사 결과 및 재정투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범위
 - 산란시설물 등 어장 및 산란·서식장 기반 조성
 -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수산종자 등의 방류
 -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폐어구 수거, 해적생물 구제 등 환경개선
 - 조성사업 전·후 사전·사후영향조사 및 효과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등

7. 중요재산 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 별표 7(기타동산)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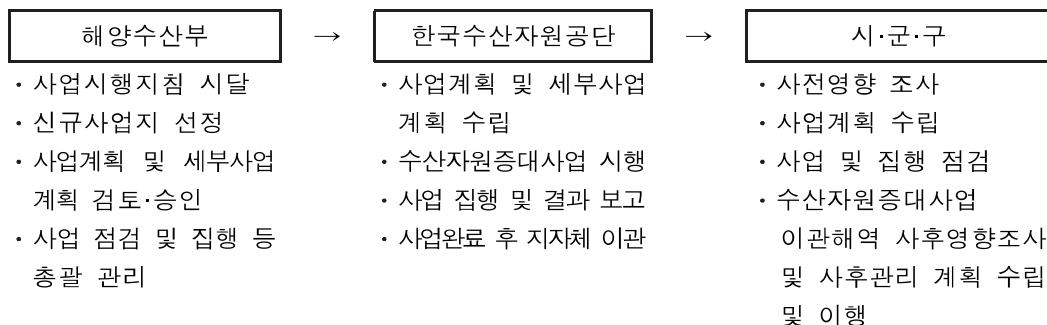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23년 12월(해양수산부)
- 차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 2024년 3분기(해양수산부)
- 사업지 선정 모집 공고(해양수산부) : 매년 11~1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 시달
 - 공고시기: 전년도 4분기
 - 신청절차: 해당 지자체의 장은 조성해역과 대상품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 당해연도 수산자원증대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시·도(시·군·구)

-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대한 사전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사전영향조사 보고서 1부,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사후관리 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어업인 동의서(서명포함) 1부【별지 제4호서식】, 사업 선정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한국수산자원공단

-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사업 신청 지원
 - 당해연도 사업계획에는 수산자원 증대사업의 추진절차, 추진방향,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지원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또는 공단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지 선정(전년도 4분기)
 - 수산자원 증대사업 조성지로 확정된 지역은 5년간 계속 추진
- 선정방법
 - 해양수산부, 공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영향조사 및 사업계획수립 결과, 후보지 신청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사업지, 기본계획변경 검토 및 심의
 - (신규사업지 선정)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사전영향조사 보고서 등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 후보지를 상정하여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는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요건에 적합한 신규사업지 선정
 -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확정
 - (사업계획 변경검토)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급격한 해양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 변경여부 검토 및 승인
 - * 대규모 해양공사 계획, 해양환경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적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사업 차질 발생 등
- 선정 우선순위
 - 수산자원증대 사업의 사후관리가 우수한 지역(수산자원 증대사업의 별도 사후관리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한 지역 등)
 - 과거 추진했던 수산자원 증대사업, 바다숲, 인공어초, 종자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이 명확한 지역
 -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업 협조가 적극적인 해역
 - 과거 3년 내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부진, 사업포기로 인한 패널티를 받은 사업지역은 우선순위 고려 제외
 - 과거 수산자원증대 추진 실적 대비 사업구역 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실적에 따라 가점부여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당해연도 수산자원증대사업 세부사업계획 검토·승인
- 수산자원증대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국비 50%)를 민간보조로 공단의 예산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 당해연도 책정된 지방비(50%)는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시·도(시·군·구)

-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및 업무관리 협약 체결【별지 제1호서식】
- 사업적 특성에 따라 필요 시 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사업지에 대한 당해연도 실시사업계획 검토·심의
 -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세부사업계획 수립·변경 등 심의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50% 또는 100%의 국비(민간자본보조)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및 정산 등의 제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지방비 배정 요청
 - 세부사업계획에는 어장(기반)조성, 자원조성(방류 등), 환경개선, 효과조사 등 예산투입 용도별 세부사업 추진 절차 및 예산배분 등 세부적 사항 기재
-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 완료 후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목적, 유형, 해역,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 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자체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 실시
 - 당해년도 세부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와 협의 후 공단 이사장의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6.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시·군·구)

- 지자체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 지자체는 사업개시 전까지 어업인 협의를 거쳐 대상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사업기간 내에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별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에 보고
-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도(시·군·구)

-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 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수산자원공단

-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
-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지자체와의 업무관리 대행협약에 의거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정산결과와 사업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자체에 통보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 증대사업 사후관리 관련 지침 개정 및 시달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관련 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수립 및 이행
- 조성이 완료되어 이관받은 해역에 사후관리 추진 시 공단으로 기술자문 등
- 사후관리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보고
- 사후영향조사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수행 또는 위탁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산란·서식장, 시범바다목장 등)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 이전
- 효과평가 및 사후관리 관련 매뉴얼, 프로세스 구축 및 기술지원
- 이관된 사후관리 해역 DB 구축 및 관리

《제재》

해양수산부

- 점검결과 사업 지연 및 부당집행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시정조치
- 지방비 미확보,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 지자체 사업포기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신규사업 선정 시 패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사업지 선정 제외 등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도 ○○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2024. . .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2024년도 ○○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00시(군)”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대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23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대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행사무의 범위)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지 조사 및 구조물 시설에 관한 사항
2. 효과 등 모니터링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 관한 사항
4. △△△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00시(군)”와(과) “공단”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00시(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지급 등) ① “사업비”라 함은 조사·설계비, 구조물 설치비, 모니터링 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00시(군)”은 “공단”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공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

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00시(군)”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00시(군)”은 “공단”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원회 개최) “00시(군)”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수당 등 필요 경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 제8조(지도·감독) ① “00시(군)”은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00시(군)”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관계법령·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00시(군)”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00시(군)”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00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공단”的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00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단”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00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00시(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00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사업비 잔액(집행잔액) 반납 시 위탁대행수수료의 정산금은 별도 반납하지 않는다.

-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00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전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2. “00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 3. 기타 사정으로 “00시(군)”, “공단” 쌍방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 4. “공단”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5. “공단”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 ② “00시(군)”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공단”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위탁대행 수수료) “00시(군)”이 “공단”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000백만원)로 한다.

제15조(보고의무) “공단”은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용어해석 및 분쟁해결)

-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00시(군)”과 “공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00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00시(군)”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00시(군)”과 “공단”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00시(군) 000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사업계획서

개요

- 위치 :
- 조성면적 : 000km²(00,000ha)
- 사업기간 : 0000~0000(5년간)
- 사업비 / 지원조건 : 0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대상 품종 :
- 사업추진 경위
 - '00~'00 : 예비타당성 조사
 - '00~'00 : 산란·서식장 후보지 선정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연구
 - '00~ : 사업 착수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 어업 특성
 -
 -

사업추진 방향

-
-
-

주요 사업내용

- 산란장
- 서식장
- 종자방류
-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용도구분	내용구분	재 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비 고
어장조성 (기반조성)	산란장,	국 비							
	서식장, 보육장	지방비							
	조성 등	소 계							
종자방류 (자원첨가)	부화방류,	국 비							
	치어방류 등	지방비							
		소 계							
환경개선	해적생물구제,	국 비							
	폐기물수거 등	지방비							
		소 계							
효과조사	자원량,	국 비							
	현존량, 생산량	지방비							
	조사 등	소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종합 조성계획도

- 해역 현황도(수심, 어장분포, 해양환경 등)



□ 종합 조성계획도



향후 추진계획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별지 제3호 서식】

학 약 서

제목: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및 사후관리

000도와 000시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산란·서식장의 사후관리 주체로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산란·서식장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어업인 동의서 및 서명서

년 월 일

000 시도지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동의서

제목: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

000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수면이용의 제한 등에 동의하며, 산란·서식장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첨부: 어업인 동의 서명부

년 월 일

000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000 (인)

③ 수산종자 자원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	044-200-5530 044-200-5536

I.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종자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수산자원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방류종자인증제 대상종의 유전적 다양성(%)	70.88	70.25	70.27	70.36	집계 예정	매년 말	유전적 다양성(PIC) 분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167	4,167	4,167	4,167
- 국비	4,167	4,167	4,167	4,167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방류종자인증제(넙치, 확대 대상종),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14종), 지자체 보유 어미 유전적 관리(9종), 연어류 자원조성 및 가치창출, 고유종 보호·보존, 주요 방류품종의 표준 방류기법 마련(3종), 방류정보 플랫폼 운영, 국제협력 및 정책지원, 종자관리시설 개선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방류종자인증제(넙치, 확대 대상종),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14종), 지자체 보유 어미 유전적 관리(9종), 연어류 자원조성 및 가치창출, 고유종 보호·보존, 주요 방류품종의 표준 방류기법 마련(3종), 방류정보 플랫폼 운영, 국제협력 및 정책지원, 종자관리시설 개선 등에 대한 비용 지원

5.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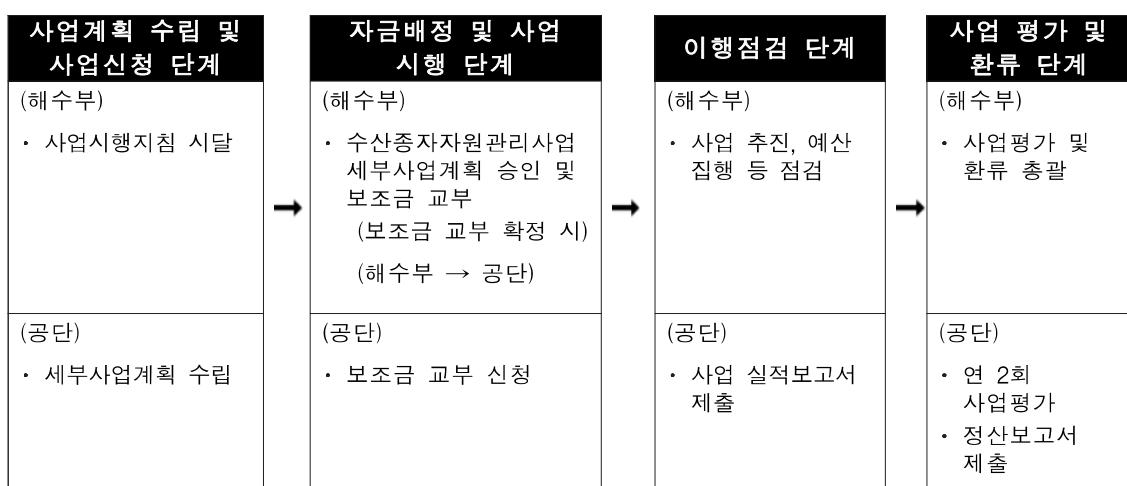
- 지원기준 및 한도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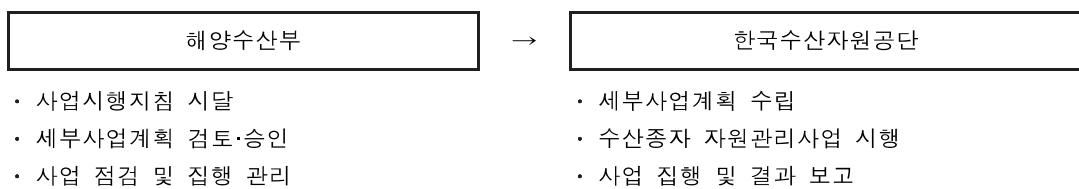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4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024.1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성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 예산 통보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승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보조금 신청>

-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신청서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 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승인하고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국비 100%)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 완료 후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공단 이사장의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 제출

6.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 및 위기(재난)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 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중간·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단은 연 2회(중간, 최종)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 차후 사업계획 반영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④ 양양 남대천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장 임태호 사무관 이준환 주무관 이은혜	044-200-5530 044-200-5542 044-200-5535

I. 사업개요

1. 목적

- 연어자원 보호 및 자원 증대를 위하여 생태친화적 연어자연산란장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연어 회귀율 확대와 관광산업 등 부가가치 창출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연어자연산란장조성	연어 자연산란장 준공	실시 설계	부지 매입	실시 계획 인가	기공	12월 말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00	-	-	-
- 국비	50	-	-	-
- 지방비	50	-	-	-
- 자부담	-	-	-	-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강원도(양양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 연어자연산란장을 설치 및 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의 연어 자연산란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생태계 기반의 연어 생태 교육·홍보 및 자원조성 증대를 위한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의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

7. 중요재산 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준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분류	구분 대상	내용연수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기타 동산	그 외 기계류 등	15년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단,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 유사 장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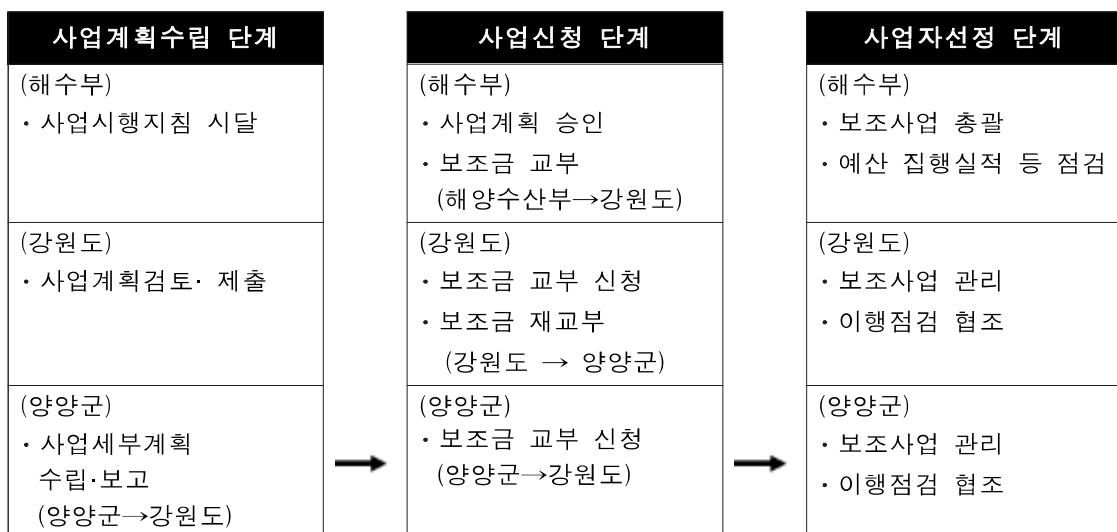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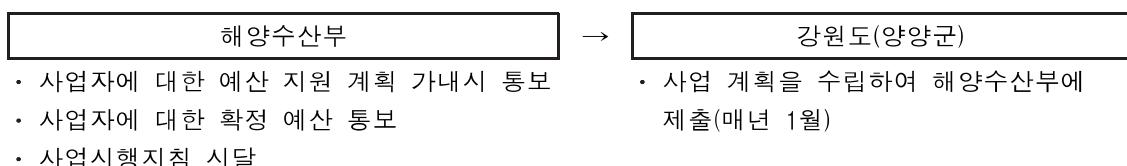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강원도(양양군)

-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선정 주체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는 강원도(양양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양양군)에 예산안 통보

강원도(양양군)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강원도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보조금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강원도(양양군)는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강원도(양양군)

- 최종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 최종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준용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 가능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강원도(양양군)

- 강원도(양양군)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및 보고
- 해양수산부의 현장점검 지원

《사업지 정산 및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강원도(양양군)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공통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사업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국고보조 비율 : ○○%

사업내용 :

예산과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법, ○○○○시행령)과 ○○○○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 ○ ○ 년 ○ ○ 월 ○ ○ 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화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통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장 임태호 사무관 곽재우 주무관 박혜진	044-200-5530 044-200-5533 044-200-5534

I. 사업개요

1. 목적

- 자원회복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을 TAC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간 어획량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어업생산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 2(한국수산자원공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 본 사업은 TAC 조사 등을 위한 수산자원조사원 현장사무소 운영비(임차비 등)로 성과목표 설정이 불가하여 세부사업(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성과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바다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2.91 (잠정)	2.29	2.44	2.64	집계 예정	매년 말	당해연도 조성완료해역(4년차)의 해조류, 저서동물 등의 생물종 다양성 분석* * (생물종다양성 산식) $-\sum_{i=1}^n P_i \cdot \ln P_i$ $P_i = i\text{번째 종의 개체수}/\text{총 개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12	857	1,102	1,316
- 국비	612	857	1,102	1,316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 전국 지정 판매장소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조사·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사원 현장사무소 운영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국 지정 판매장소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조사·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사원 현장사무소 운영비(임차비, 사무기기 등)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대상

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공시기간
현장사무소(임대)	부동산	계약기간(임차)	계약기간(임차)
그 외 사무기기 등	기타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간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 단,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임대계약 만료 등)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함

-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설치하였거나, 구입한 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구입일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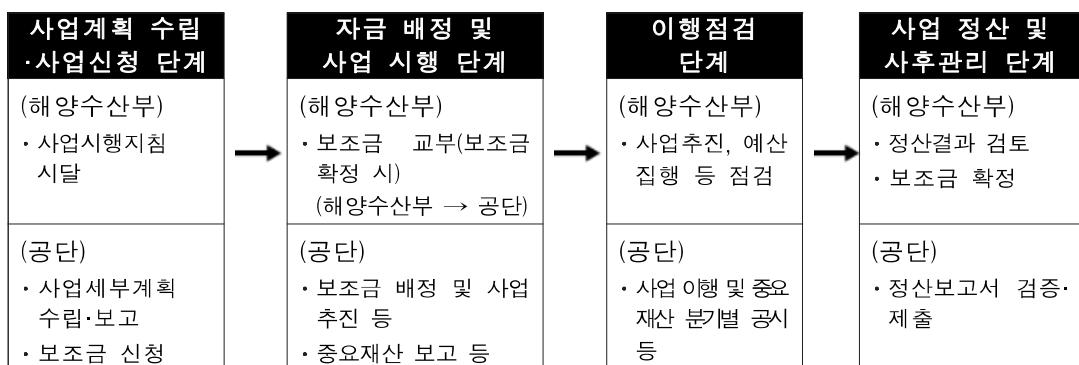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분류	구분	내용연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기타 동산	그 외 기계류 등	15년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단,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5년)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확정 예산 통보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지행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보고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한국수산자원공단

-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4. 자금배정단계

한국수산자원공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 송금 요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비의 예산회계 관계 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 검토 후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조사 등 실시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집행 상황 등 점검

《사업비 정산》

한국수산자원공단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별첨2)
-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따름

해양수산부

-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미정산 집행지연, 등의 사례 파악
-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보조금법」에 따라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조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한국수산자원공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반납 이행(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 명시)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설치하였거나, 구입한 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 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사항을 점검·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비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

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016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국고보조 비율 : ○○%

사업내용 :

예산과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통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이전(계약 만료 등)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 ○ 월 ○ ○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020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 년·월·일 :
 2. 작성자 직·성명 :
 3. 확인자 직·성명 :
 4. 보조사업자

(단위 : 원)

5. 이월·불용사유 : 흉별로 이월·불용사유 자세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⑥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장 임태호 사무관 정광월	044-200-5530 044-200-5536

I. 사업개요

1. 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블루카본 연구사업 및 탄소중립 해양 교육 등 연구 활동 및 인력양성 확대를 위해 지역거점 블루카본센터 건립

2. 근거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신규)	실시설계	-	-	-	-	12월 말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000	20,000	18,000	-
- 국비(70%)	1,400	14,000	12,600	-
- 지방비(30%)	600	6,000	5,400	-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포항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에 활동해 블루카본 연구를 위한 센터 건립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30%를 지방비로 부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의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환동해권역 블루카본 연구 및 실용화 사업을 위한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에 블루카본 센터 건립 예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의 70%(14억원)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준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기타 동산	그 외 기계류 등	15년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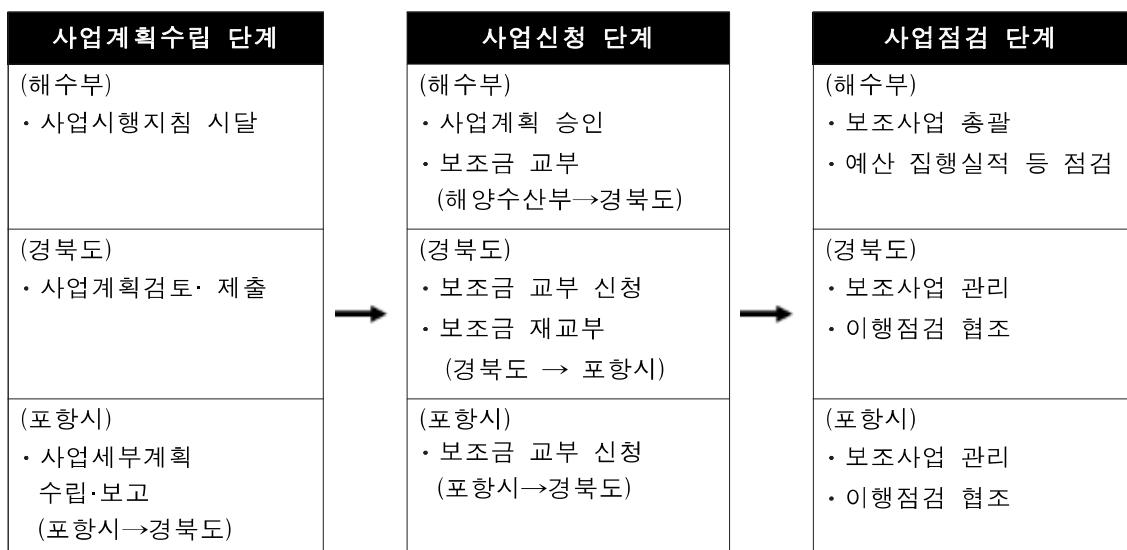
* 단,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 유사 장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름. 다만,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을 기재
- 보고 및 공시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중요재산의 표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배정 및 통보
- 사업시행지침 시달

경북도(포항시)

-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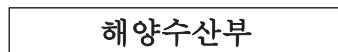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경북도(포항시)

-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선정 주체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는 경북도(포항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포항시)에 예산안 통보

경북도(포항시)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강원도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보조금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경북도(포항시)는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경북도(포항시)

- 최종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 최종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준용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 가능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경북도(포항시)

- 경북도(포항시)는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및 보고
- 해양수산부의 현장점검 지원

《사업지 정산 및 사후 관리》

해양수산부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경북도(포항시)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IV.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공통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사업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국고보조 비율 : OO%

사업내용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 ○ ○ ○ 년 ○ ○ 월 ○ ○ 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화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통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